【5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

제출연월일 : 2007. 3. .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□ 청취이유

○ 곡릉천의 수질개선 및 보호, 그리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행하고자함.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,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사업위치 : 장흥면 삼상리 475-1번지 일원

○ 시설면적 및 연장

-하수시설 : 3,606㎡ (건축면적 : 554.82㎡)

-진입도로 : 소로1류(L=121m, B=11m)
소로2류(L=497m, B= 8m)

○ 시설규모 : 3000㎥/일(하수처리장 시설용량)

○ 처리공법 : 프랑스 데그로망사의 신기술인 분리형 SBR공법

○ 사 업 비 : 4,818백만원
(국비 2,554 / 도비 1,132 / 시비 1,132)

○ 법적근거
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

□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 조서

1) 하수도 시설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하수종말 처리장	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75-1답 일원		3,606	3,606		도시지역 (개발제한구역)

2) 진입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 일	비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 로	2		8	국지 도로	497	장흥면 삼상리 산97-3	장흥면 삼상리 481-6	하수종말 처리장 진출입도로	장흥면 삼상리 474-4도 외 33필지		
신설	소 로	1		11	국지 도로	121	장흥면 삼상리 481-1	장흥면 삼상리 472-1	하수종말 처리장 진출입도로	장흥면 삼상리 471-1전 외 10필지		11m도로 구간 보도폭 양측2m

□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 사유서

1) 하수도 시설

시 설 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하수종말 처리장	위치 :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75-1답 일원 처리용량 : 3,000㎥/일 면적(㎡) : 3,606	곡릉천 수자원보호와 양주시 지역의 수질보전 및 보건위생향상

2) 진입도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-	소로 1- 호선 소로 2- 호선	B=11m ,L=121m B= 8m ,L=497m	하수종말처리장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

□ 관련 사업계획서

▲ 계획의 개요

구 분		1 단 계	4 단 계
목 표 년 도		2006 년	2021 년
건 설 기 간		착공후 24개월	
장 래 계 획 인 구		4,650	7,090
처 리 계 획 인 구		4,450	7,090
하 수 배 제 방 식		분 류 식	
처리방식	수 처 리	ALTERPAC(분리형 SBR)	
	슬러지 처리	중력식 기계농축 → 신천처리장에서 이송 탈수	
	탈 취 방 식	Biofilter	
	소 독 방 식	UV 소독(장래시설)	
계획하수량 (㎥/일)	일 평 균	1,439	2,713
	일 최 대	2,120	3,173
	시 간 최 대	3,116	4,660
처 리 시 설 용 량(㎥/일)		3,000	3,000
처 리 장 위 치		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75-1답 일대	
소 요 부 지 면 적 (㎡)		3,606㎡	
방 류 수 역		곡 릉 천 --> 한 강	

▲ 계획수질

(단위 : mg /ℓ)

구 분	유입수질		목표수질	방류기준
	2006년	2021년		
BOD	169.0	190.0	10	10 이하
COD	163.0	183.0	15	40 이하
S S	176.0	204.0	10	10 이하
T-N	32.2	32.9	15	20 이하
T-P	6.8	7.3	2	2 이하

□ 소요사업비 및 재정계획

○ 소요사업비

단위 : 백만원

구 분	소요사업비	비 고
토 목	1,106	
건 축	640	
기 계	1,865	
전 지	1,111	
조 경	96	
계	4,818	

○ 재정계획

단위 : 백만원

구 분	2005	2006	합 계	비 고
국 비	128	2,426	2,554	53%
도 비	57	1,076	1,132	23.5%
시 비	57	1,076	1,132	23.5%
계	241	4,577	4,818	100%

□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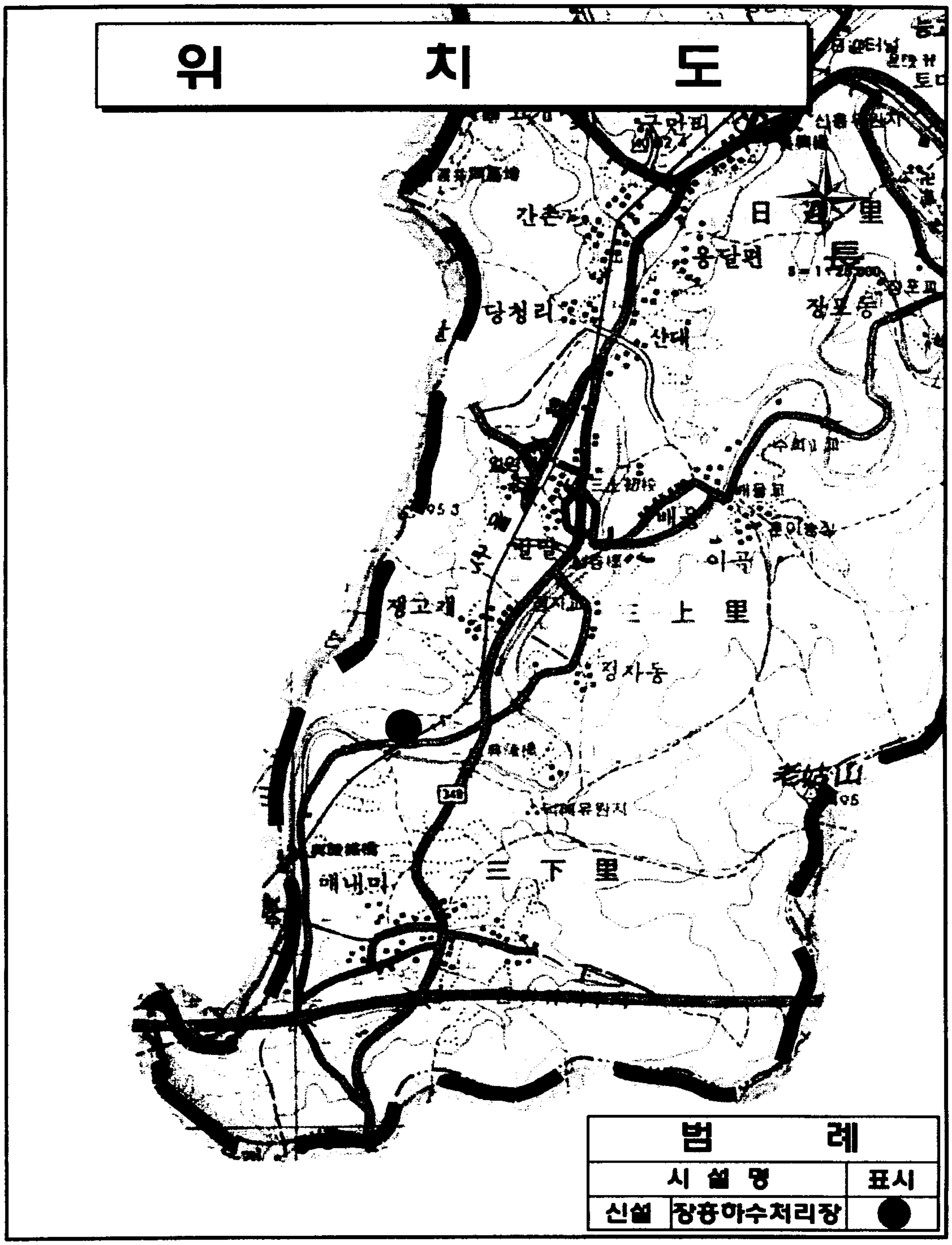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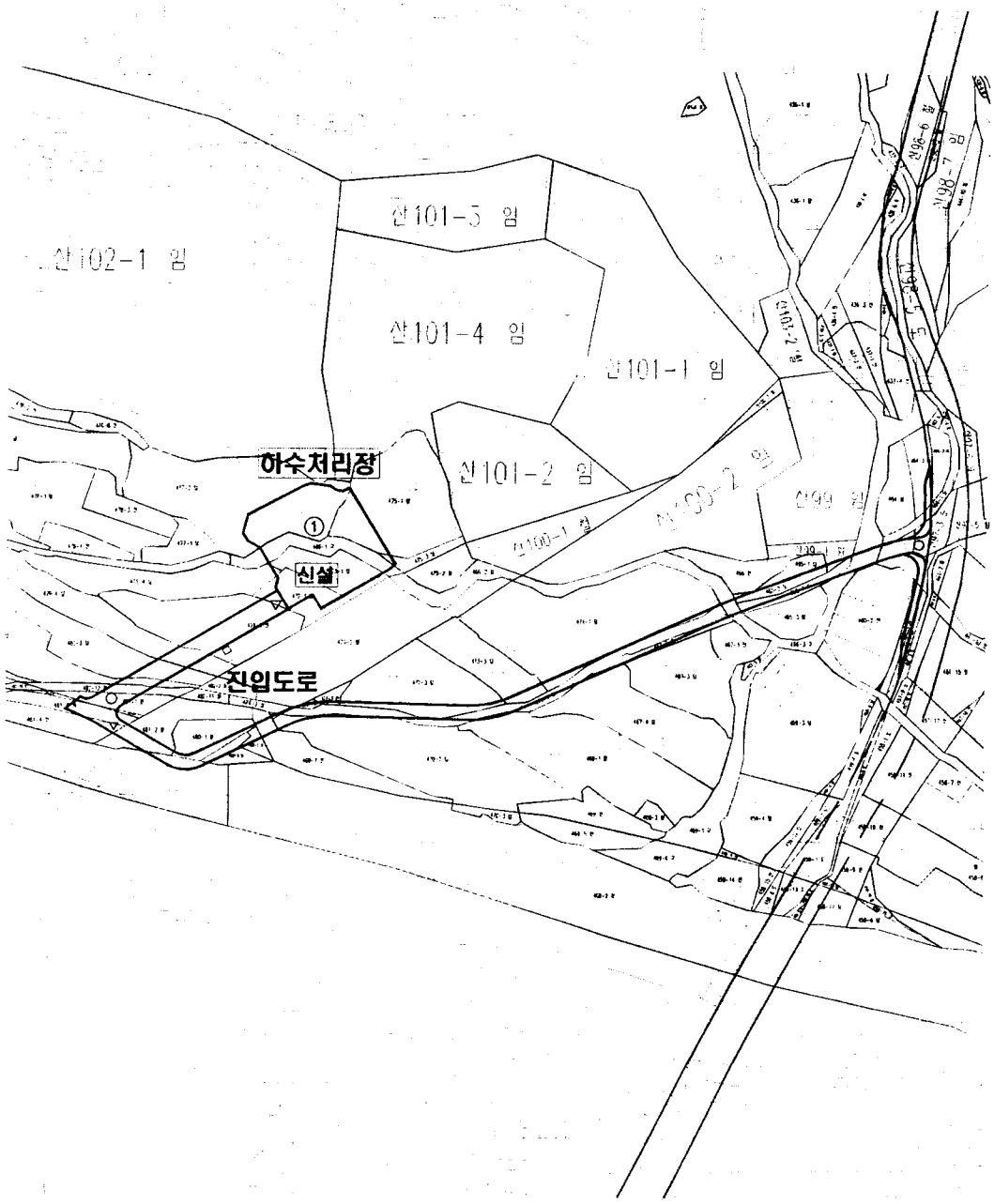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